

95610 인조잔디 포장

1 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절은 각종 운동장, 특정광장, 옥상 등의 바닥에 인조잔디를 포장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인조잔디 재료
2. 인조잔디 시공

1.2 관련 시방절(SECTION)

1.2.1 25300 골재공

1.2.2 95100 화강석 판석 및 포석 포장

1.3 적용기준

다음 기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D 7017 - 95 (용접철망)
2. KS M 3509 - 88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3. KS M 7501 - 79 (크라프트지)

1.4 제출물

『01210 제출서류 및 보고서』 따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량 및 제출기한은 발주시방에 따른다.

1.4.1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s)

모든 시공상세도면은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후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시공상세도면 목록의 가감은 발주시방에 따른다.)

1. 인조잔디 단면시공상세도:

1.4.2 견본

수급인은 제출견본에 대하여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인조잔디재료: 2개이상 제조업체 견본제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1.4.3 품질시험 성과표

아래 각 항목에 해당되는 제품 또는 자재는 발주시방에 따른다.

1. 반입될 제품 및 자재에 대해서는 KS표시 인증사본, 품질인증 승인서류 사본,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받은 형식승인서류 사본 등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위 1항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 또는 자재에 대해서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성과표 또는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자체시험 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4 제품자료

1. 『03210 시공상세도면, 재료공급원 일람표, 제품자료 및 시료, 기타제출자료』 절의 "1.7 제품자료" 에 따른다.
2. 수급인은 1항에 따라 제품 및 자재사양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목록은 별도 발주시방에 따른다.

1.4.5 시공상태 검측확인서

수급인은 시공전 이 절 "3부. 시공" 내용에 따라 시공상태 검측확인서를 작성·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자격

인조잔디 포장작업을 수행할 기술자는 이 분야에 숙련된 기술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구체적 자격기준 및 경력은 별도 발주시방에 따른다. 자격사항이 필요없을 경우 본항은 삭제한다.)

1.5.2 시험시공

인조잔디 포장작업전에 감리원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공에게 시공방법 및 시공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시공량 및 횟수는 발주시방에 따른다.)

1.6 운반, 보관, 취급

- 1.6.1 인조잔디 공사에 사용될 주자재 및 부자재중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등)을 받아 변질 우려가 있는 자재는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 또는 덮개시설이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6.2 사용될 재료가 눈, 비, 시멘트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지면에 방치해서는 안된다.

1.7 시공환경 요구사항

- 1.7.1 수급인은 동결기의 경우 동결된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동결된 면위에 시공하거나 바탕을 형성해서는 안된다. 동결로 손상된 포장은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 1.7.2 수급인은 강우시 또는 일정온도 [10] []°C이하에서는 감리원이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인조잔디 포장작업을 할 수 없다..

2 부. 자재

2.1 재료

2.1.1 인조잔디 재료

별도 발주시방 또는 제조회사의 제품사양에 따른다.

2.1.2 접착제

별도 발주시방 또는 제조회사의 제품사양에 따른다.

2.1.3 동상방지층용 재료

『25300 골재공』 절의 "2.5 동상방지층 골재의 입도 및 품질요건" 에 따른다.(동상 방지층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는 본항은 삭제한다.)

2.1.4 기층용 쇄석재료

『25300 골재공』 절의 "2.1 공통사항과 2.2 입도조정기층 골재의 B-2 범위" 를 따라야 한다.

2.1.5 분리막 재료

분리막은 『KS M 3509, KS M 7501』 에 적합하거나 동등품질 이상으로 포장용 폴리 에틸렌필름 또는 크라프트지로 두께는 [0.1] [] mm 이상 이어야 한다.

2.1.6 용접철망

『KS D 7017』 에 적합하거나 동등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2.1.7 기타재료

발주시방에 따른다.

2.2 자재 허용차

(자재에 대한 허용차 사항 있을 경우 별도 발주시방에 따른다. 없을 경우 본항은 삭제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수급인은 현장반입자재에 대하여 자재구비요건에 부합되는지에 대하여 감리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3.2 대체자재 사용에 대한 사항은 『05310 재료 및 기기』에 따른다.

3부. 시공

3.1 시공기준

3.1.1 원지반다짐

『95100 화강석판석 및 포석포장』 절의 "3.1.1 원지반 다짐"에 따른다.

3.1.2 동상방지층

『95100 화강석판석 및 포석포장』 절의 3.1.2 동상방지층에 따른다. (동상방지층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본항은 삭제한다.)

3.1.3 쇄석기층

『95100 화강석판석 및 포석포장』 절의 "3.1.3 쇄석기층"에 따른다.

3.1.4 콘크리트 기층

1. 『95100 화강석판석 및 포석포장』 절의 "3.1.4 콘크리트 기층"에 따른다.

2. 마감면이 자연스런 배수경사가 되도록 최소 우수구배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5 인조잔디 포장

1. 콘크리트면의 먼지, 모래, 흙 등의 오염된 바탕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습기가 없는 건조상태로 함수율 10 % 이하 상태에서 접착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제조업자의 접착제에 대한 특별한 혼합 및 시공지침이 있을 경우 이 지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 시공중 외기온도 10 °C 이하에 접착제를 방치해서는 안되며 물기 및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5. 접착제 도포후 명시된 시간이 경과된후 인조잔디를 접착하여야 한다.

6. 인조잔디는 압착이 균일 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7. 접착이 불충분한 부분은 WEIGHT로 고정시켜 시공한다.

3.2 시공허용오차

(발주시방에 별도 명기된 경우를 제외하고 아래 허용오차를 따른다.)

3.2.1 원지반다짐 허용치

『95100 화강석판석 및 포석포장』 절의 "3.2.1 원지반 다짐면 허용치" 에 따른다.

3.2.2 동상방지층 및 쇄석기층면의 허용치

『95100 화강석판석 및 포석포장』 절의 "3.2.3 쇄석기층면 허용치" 에 따른다.

3.2.3 콘크리트 기층

『95100 화강석판석 및 포석포장』 절의 "3.2.4 콘크리트 기층면 허용치" 에 따른다.

3.2.4 인조잔디 포장면

(구체적 사항은 별도 발주시방에 따른다.)

1. 표면오염상태:
2. JOINT 틈새발생 간격:
3. 잔디면 요철발생정도:

3.3 현장품질관리

3.3.1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후 감리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수급인은 검사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않을 경우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